

기업지배구조 현장

전문

주식회사 LG(이하 “회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공정하고 정정당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여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전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촉진해 사회적 신뢰와 기업가치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을 갖고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과 실천 사항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현장을 제정한다.

주식회사 LG는 기업지배구조 현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구성·운영되는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책임경영을 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1. 주주

(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참여,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 분할, 해산, 자본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 증가 등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와 종류별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관련 거래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이사회

(1) 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3인 이상으로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이사 선임

- ① 회사 가치의 중대한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심대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임 단계에서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해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5)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안건, 경과 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④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

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7)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이사를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와 재선임 결정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다.
- ②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③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주요 산정 기준과 지급 금액을 공시한다.

3.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1인은 재무, 회계 등의 감사업무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명문화하여 정해진 회계와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의 실시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과 주요 활동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회사 또는 주주총회 의장 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해야 한다.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 ② 회사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가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정보 공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개 및 설명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⑥ 회사의 대표이사과 공시담당 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2)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